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894 발의연월일: 2009. 9.28.

발 의 자:이은석·강문기 의원

(찬성자 7인)

# □ 제안이유

가. 준 공업지역안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, 다세대·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 하도록 하여 노후·불량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도모

# □ 주요내용

- 가.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와
- 나.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(계획구역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.)

# □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2호나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나. 아파트(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)
  - 1)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·다세대· 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
  - 2)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(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.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 대비표

혂 개 젓 아 했 제43조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|제43조 --있는 건축물) 1. (생략) 1.(현행과 같음) 2. 『건축법시행령』 별표 1 제2호 의 공동주택 가. (생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아파트(동일단지 안에서 기 나. 아파트(다음 어느 하나에 해 존 아파트의 재건축 및 기존 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시 아파트와 동일단지로 볼 수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있는 인접한 연립·다세대주 하다) 택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 1)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며,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있는 건축물중 기존 아파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) 재건축 또는 기존 아파트의 재 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 · 다세대 · 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2)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・다세대・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(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 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.)

#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ul> <li>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       ○ 제76조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)</li> <li>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        ○ 제71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</li> <li>□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       ○ 제43조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</li> <li>"내용은 별지 작성"</li> </ul>
관련조례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# 관 계 법 령

## 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76조 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)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② <u>제37조</u>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기준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.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<u>제37조제1항</u>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따로 정한다.
- 2. <u>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</u>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3.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,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<u>「농지법」</u>, <u>「산</u>지관리법」 또는 「초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4.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<u>「자연공원법」</u>에 따른 공원구역, <u>「수도법」</u>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<u>「문화재보호법」</u>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, <u>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</u>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<u>「자연공원법」</u>, <u>「수도법」</u> 또는 <u>「문화재보호법」</u> 또는 <u>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</u>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5.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<u>「수산업법」</u>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·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, 자연환경 보전,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농지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,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

### 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1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(이하 "건축제한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 다.

- 1.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
- 2.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
- 3.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
- 4.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
- 5.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
- 6.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
- 7.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
- 8.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
- 9.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
- 10.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
- 11.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
- 12.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
- 13.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
- 14.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
- 15.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
- 16.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
- 17.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
- 18.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
- 19.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
- 20.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
- 21.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 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.

[별표 14] <개정 2008.2.22.>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71조제1항 제13호관련)

#### 1.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. 다만, 「주택법」 제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.
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
- 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- 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
- 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
- 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- 2.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 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 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
  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  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

  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 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
  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
  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
  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
  - 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
  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  - 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
  - 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
## □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

제43조 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14 제1 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.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<개정 2006-01-02>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 <개정 2006-01-02><개정 2009-1-12>
- 가. 연립 및 다세대주택(군수·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 다.)
- 나. 아파트(동일단지 안에서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및 기존아파트와 동일단지로 볼 수 있는 인접한 연립·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며,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) <개정 2004-12-27>
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<개정 2006-01-02>
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<신설 2006-11-20>
-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영 별표14 제1호라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(다

- 만,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) <개정 2006-11-20><개정 2009-1-12>
-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<개정 2006-11-20>
-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(오피스텔을 제외한다) <개정 2006-11-20>
- 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의 공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) <개정 2006-11-20>
- 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<개정 2006-11-20>
- 10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<개정 2006-11-20>
- 11. 건축법 시행령 |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<신설 2006-11-20>

# 타 시・도 조례

## □ 서울시

-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
- 『건축법 시행령』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
- ⇒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 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)
- 산업부지 확보비율

사업구역 내 공장비율	사업구역 면적대비 <b>산업부지</b> 확보비율	비고
10~30% 미만	20% 이상	
30~50% 미만	30%이상	사업구역은 준공업 지역만을 대상으로
50% 이상	40%이상	산정

◇ 단독주택, 공동주택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공장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

# □ 부산광역시

-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
- 제13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3
- 단독주택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노인복지주택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공장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

## □ 대구광역시

-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(준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
  - ◇ 단독주택,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, 안마시술소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 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공장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

## □ 광주광역시

- 광주광역시도시계획 조례 제39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
- 제13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
- 단독주택(공관 제외),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,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, 종교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공장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·도계장, 교정 및 군사시설(교도소·감화원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

# □ 대전광역시

- 대전광역시도시계획 조례 제38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
- 제13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

○ 단독주택,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제외),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공장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방송통신시설

# □ 인천광역시

-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 제43조(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
- ◇ 단독주택, 공동주택(아파트,연립 및 다세대주택)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공장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방송통신시설
- ※ 아파트 : 동일단지 안에서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및 기존 아파 트와 동일단지로 볼 수 있는 인접한 연립·다세대주택을 포함 하는 경우에 한하며,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